

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,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7. 01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



1. 건 명 :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
2. 근 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,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07. 01. ~ 2026. 07. 15. (15일간)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지역협력과(3층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정현화(Tel. 061-650-02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